

청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단61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851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단6108 판결

전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승현

피 고 1. 학교법인 C

2. 재단법인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연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F와 피고 학교법인 C, 피고 재단법인 D 사이의 2017. 9. 25.자 임대차계약(청주시 흥덕구 G, H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5층 운동시설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1층 I호 94.40㎡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C과 피고 재단법인 D이 각 1/2 지분으로 체결)을 25,494,9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C과 피고 재단법인 D은 각 12,747,4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J(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2009. 11. 30. 보통대출 과목으로 10,000,000원, 2015. 10. 16. 보통대출2 과목으로 5,000,000원, 2016. 2. 23. 보증부 서민대출과목으로 20,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2021. 5. 11. 기준 소외인의 채무 잔액은 25,494,988원이다.

나.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2011. 4. 25. 소외인에게 청주시 흥덕구 G, H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5층 운동시설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1층 I호 94.4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400,000원, 월 임료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F는 2017. 9. 25. 피고 학원과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45,400,000원, 월 임료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1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바, 피고 F와 피고 학원, 피고 재단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을 소멸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학원, 피고 재단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피고 F를 수익자로, 피고 학원 및 피고 재단을 전득자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학원 및 피고 재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득자라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26. 소외인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7,648,255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8카단234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발령받은 사실, 이 사건 가압류 직후 원고는 피고 학원 및 피고 재단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는 2018. 10.경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8.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